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1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김태규 · 이달희
박덕흠 · 강대식 · 윤용근
임종득 · 백종현 · 최은석
안철수 · 김 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, 심지어는 초등학교마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·운영에 연루되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. 또한,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·절도·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, 청소년유해약물,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,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함.

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,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·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도박 중독 청소년 상

담·검사·치료·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3 신설).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3(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
2.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3. 청소년 도박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·검사·치료·재활 서비스 제공
5. 그 밖에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4조의3(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1.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</u> <u>2.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</u> <u>3. 청소년 도박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/u> <u>4.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·검사·치료·재활 서비스 제공</u> <u>5. 그 밖에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</u> <u>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</u>

<u>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